

수원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50348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5034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4 선고 2017가단230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안

담당변호사 김신아, 김혜민, 손지훈, 윤서용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변론 종결 2020. 7. 23.

판결 선고 2020. 9. 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4. 선고 2017가단230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D 임야 84,997㎡ 중 별지 감정도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6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08㎡를 인도하고, 별지 감정도 73, 74, 75, 76, 7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하우스(건물) 99㎡를 철거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사용한 약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과 개들의 견사 및 창고가 있는데 이는 피고가 2002.경 임대차를 시작할 무렵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종중의 동의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로서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E종중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덕수

판사하성원

판사송승용

별지